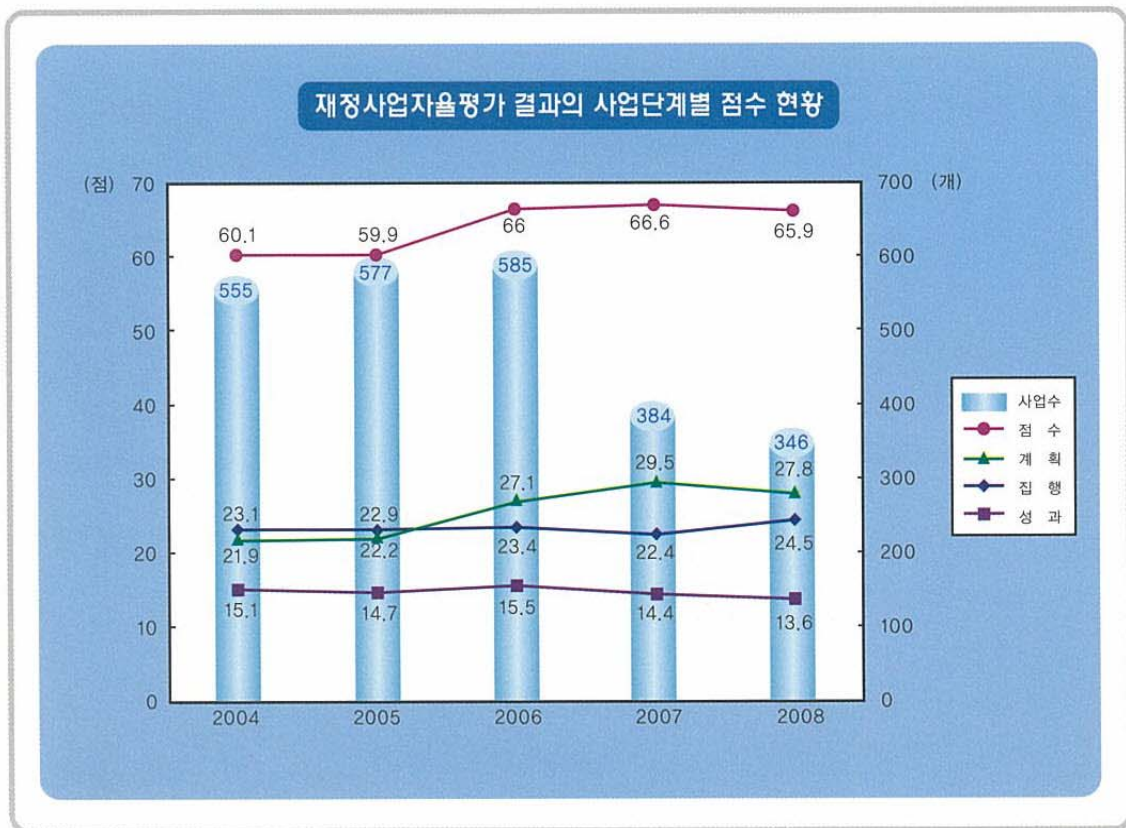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박 홍 업



2009.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박홍엽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02-788-4670
widelite@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00222-000729-14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박 홍 엽

2009.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간 사

재정사업자율평가는 매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의 1/3을 선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 관련 정보를 예산편성시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성과관리제도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확대된 재정사업의 성과창출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에 555개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346개의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실시한 자율평가 결과 및 제도운영 현황을 검토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율평가결과의 예산심사への 환류 여부,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회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각 부처의 ‘성과계획’ 및 ‘성과’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각 부처에서는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향후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시와 정부의 예산편성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자율평가 결과를 국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조항에 “평가결과를 정부의 예산안 및 국회의 예산심의시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사업별 제도개선에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국가예산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요 약

I. 서 론

-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요구받기 때문에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
- 지난 5년 동안 실시한 자율평가 결과 및 제도운영 현황을 검토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율평가결과의 예산심사への 활용 여부,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II.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현황

- 재정사업자율평가란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한편,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05년에 도입됨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와 함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임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performance monitoring)란 각 부처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함

-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program evaluation)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부처간 유사, 국회·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심층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 중복사업 또는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 급증이 요구되는 사업,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깊이 있게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함
- 평가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 단위를 평가단위로 조정하거나 평가실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도 가능
- 공통평가지표가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에는 15개이었는데 현재는 공통 질문 11개 항목과 7개 사업유형별 질문 1-3개로 구성됨
- 평가는 계획(30점) - 집행(20점) - 성과·환류(50점)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100-90점),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으로 등급이 매겨짐

III. 평가와 정책적 제언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21.9 -29.5점의 점수를 얻고 있는데 이를 백분비율로 환산하면 43.8 - 59%에 해당
 -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점수가 계획단계,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고,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은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부족

- 2007년도의 384개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104개 사업 중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은 33건이나 되며, 이는 전체의 32%에 이름
-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예산이 감소된 경우가 많고,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도 2/3 이상의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고 28% 사업의 예산이 감소
-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1/4 이상의 사업들의 예산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경우가 있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사업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됨

□ 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와 연계시 국회에서의 검증장치 필요

- 국회와 정부 모두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국회예산심의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
-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정부 내부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평가방식을 결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여부와 활용 정도도 정부 자체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성과관리의 일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법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임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조항에 “평가결과를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시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예산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정부는 정부입장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있듯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는 국회입장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목표설정의 합리성’, ‘대안분석의 적정성’, ‘최적안 개발’ 등 4가지 부문에 걸쳐 8가지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재정당국의 평가 간의 차이 축소 필요

-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와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점검·확인 결과 간에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하면서 점수 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임.
-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자체평가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
 - 부처가 자율적으로 엄격히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 성과개선 및 예산절감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의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유형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간접수행사업으로 구분해 평균점수를 구해보면, 직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가 간접수행사업의 그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항목, 질문문항 및 가중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핵심적인 평가지표의 제외로 자율평가제도의 형식화 우려

-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평가지표가 도입 초기에 비해 그 수가 20% 이상 줄어들었음
- 제외한 평가지표들은 ‘사업목적의 명확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재정지출의 필요성’, 그리고 ‘이해관계인 만족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요소들임
- 이러한 요소들은 변별력이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 평가결과를 예산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조정할 필요

-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과통보에서부터 예산요구서 제출까지의 시일이 너무 짧아 각 부처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획재정부로부터 자율평가 결과가 6월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6월말까지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통보시기를 앞당겨 평가결과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때부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필요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법령개정, 사업관리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늘리고, 각 부처의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그 일환으로 각 부처가 자율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실적을 평가주무기관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평가결과 요약]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결과
재정사업자을 평가 점수 분 포 분석	사업의 계획-집행-성과 단계 가운데 취약한 분야 파악 및 강화	계획단계, 집행단계에 대한 평 가점수에 비해 성과·환류단계 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고, ‘성과계획’ 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게 나 오고 있으므로 각 부처의 재 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 화할 필요
재정사업자을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 정도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정부의 예산편성시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재정사업자을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고, 성과주의 예산과 지 속적인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재정사업자을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재정사업자을 평가 결과의 국회에 산심의 의 활용 가 능성	자율평가결과가 국회예산심 의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 악해 향후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재정사업자을평가 결과가 국회 와 정부 모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의 재정사업자을평가 조 항에 “평가결과를 정부의 예산 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 의시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 을 추가해 예산과정에서 평가결 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부처 자체 평가 결과와 주관부 처(기획재정 부) 평가결과 간의 커다란 차이	부처 자체평가와 주관부처 평 가결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 고 개선방안 제시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하면서 점수 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자 체평가 기능 및 역량을 강화 하고 동 제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
사업유형에 따 른 평가결과 의 차이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 업 간의 평가결과 차이를 파 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항목, 질문문항 및 가중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 는 것이 필요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결과
재정 사업 자율 평가의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변경현황 및 배 경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도입초기 15개 공통평가지표 가 현재는 11개로 축소됐는데, 제외한 평가지표들이 ‘사업목 적의 명확성’, ‘재정지출의 필 요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됨
재정 사업 자율 평가의 실시 시기	자율평가결과 통보시기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시기 의 중첩과 개선방안 제시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과통보에 서부터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까지의 시일이 너무 짧아 각 부처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 가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및 평 가결과 통보시기를 앞당겨 평 가결과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 서 작성 때부터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재정 사업 자율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별 제도개선 여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개선 권 고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 고 있는지 파악해 개선방안 을 모색	자율평가 결과를 법령개정, 사 업관리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미 흡하므로 향후에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늘리고, 각 부처의 권고안의 이행실적을 평가주무 기관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차 례

요 약 / v

I. 서 론 / 1

- 1. 평가의 필요성 1
-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2

II.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현황 / 4

-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의의 4
- 2. 타 성과관리제도와와의 관계 5
-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구성 8
 - 가. 평가대상사업의 선정 8
 - 나.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8
 - 다. 평가등급 12
 - 라. 평가결과의 활용(예산과의 연계) 13
 - 마. 평가실시 절차 14
- 4.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04~2008) 15

III. 평가와 정책적 제언 / 17

-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17
- 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부족 19
 - 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따라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 19
 - 나. 평가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의 불일치성 24

3. 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와 연계시 국회에서의 검증장치 필요	27
가. 국회예산결정과정에서 평가결과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27
나.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28
다.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할 때 국회차원에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	30
4.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재정당국의 평가 간의 차이 축소 필요	36
5.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41
6. 핵심적인 평가지표의 제외로 자율평가제도의 형식화 우려	43
7. 평가결과를 예산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조정할 필요	45
8.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필요	45

IV. 결 론 / 47

참고문헌 / 51

표 차례

[표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의 주요 내용	2
[표 2]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지표별 배점	10
[표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15
[표 4] 사업단계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17
[표 5] 2007년도 평가대상사업의 2009년도 예산에의 반영 현황	20
[표 6] 2007년도 ‘미흡’ 등급 사업 중 10%이상 삭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 ...	21
[표 7] 2005-20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급과 국회예산조정	28
[표 8] 자율평가 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항목 ...	31
[표 9] 2007년도 부처자체 평가와 재정당국 최종 평가 간의 차이(매우 우수 등급 국한)	36
[표 10] 2008년도 부처자체 평가와 주관부처 최종 평가 간의 차이(매우 우수 등급 국한)	38
[표 11] 사업유형별(직접수행사업/간접수행사업) 평가 결과	41

그림 차례

[그림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타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7
[그림 2]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급의 변화	12
[그림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원칙	13
[그림 4] 사업단계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18

I. 서 론

1. 평가의 필요성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은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요구받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팽창된 지출을 축소시켜야 하는 과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는 특정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활용되는 것이다. 반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특정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당초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심사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확대된 재정사업의 성과창출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제도로 2005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5번째 실시되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획득된 사업 및 성과 관련 정보를 예산심사시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면서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율평가결과의 예산심사에의 활용 여부,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도입의 가장 큰 취지인 평가결과의 예산연계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으며, 국회예산 심의와

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정부의 예산편성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통해 사업별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실시된 5번의 자율평가결과와 제도운영 현황을 평가범위로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주로 평가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 평가사례에 대한 분석도 사용되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표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의 주요 내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재정사업자율평가 점수 분포 분석	사업의 계획-집행-성과 단계 가운데 취약한 분야 파악 및 보강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 정도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정부의 예산편성시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국회 예산심의에의 활용 가능성	자율평가결과가 국회예산심의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부처자체평가결과와 주관부처(기획재정부) 평가결과 간의 커다란 차이	부처자체평가와 주관부처 평가결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제시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결과 차이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업 간의 평가결과 차이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변경현황 및 배경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제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실시 시기	자율평가결과 통보시기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시기의 중첩과 개선방안 제시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별 제도개선 여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개선 권고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

먼저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드러난 사업단계별 점수분포를 보면서 어느 단계가 가장 취약한지를 파악하고 향후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어느 단계가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도입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여부를 파악한 후 향후 예산과의 연계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현재 정부 내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국회에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넷째, 자율평가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각 부처자체평가지 평가결과가 부풀려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을 크게 정부가 직접수행하는 사업과 간접수행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만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여섯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 초기에는 15개의 공통평가지표가 있었는데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11개의 공통평가지표만 남았다. 삭제된 평가지표의 내용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삭제된 평가지표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일곱째,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최종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시기와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시기가 맞물리면서 현실적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분석한다.

여덟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사업별 제도개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도개선 권고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II.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현황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의의

재정사업자율평가란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재정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해당 사업에 대해 자율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한편,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재정사업 효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기획예산처, 2007B, 공동성 외, 2007: 27).

재정사업자율평가는 평가결과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기획재정부, 2009: 34-35).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됐지만 첫해에는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됐고, 2006년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2005년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자율성을 갖되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¹⁾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각 부처에 예산편성의 자율권

1)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총지출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규모를 설정하고, 이러한 총액배분의 틀 하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을 부여하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사업의 성과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예산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예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환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됐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제고를 위해 단위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부여하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산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셋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사업부문에 대한 평가수단을 마련할 필요 때문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됐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예산편성방식이 부처의 자율편성을 중시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장치로 도입됐고, 그 목적은 재정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타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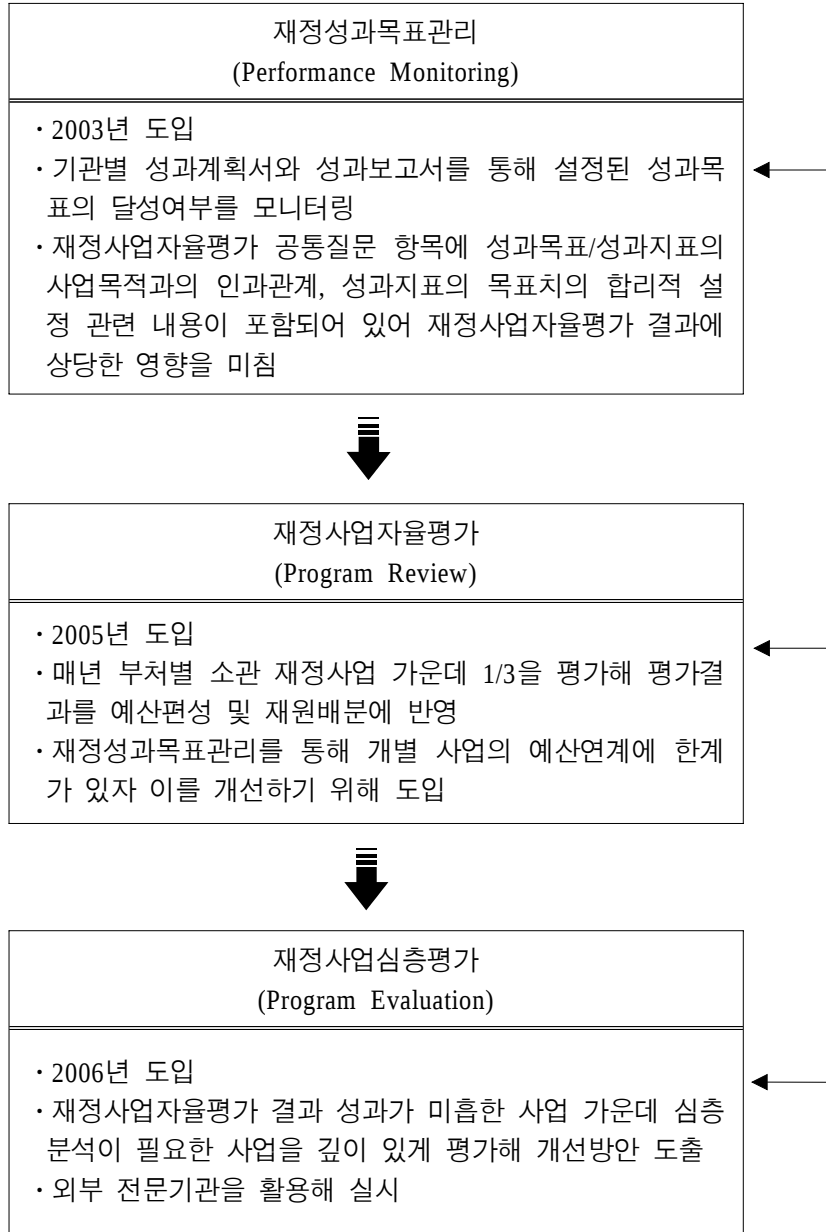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와 함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performance monitoring)란 각 부처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하고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회계연도 1년 전에 각 부처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집행결과를 성과보고서로 작성하는 제도이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를 통해서 는 개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그 성과평가의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시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2005년에 새로이 도입됐다(박노옥, 2008: 20; 신종숙, 2006: 19).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program evaluation)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부처간 유사, 국회·감사원 등 타 기관에서 심층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 중복사업 또는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 급증이 요구되는 사업,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깊이 있게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심층평가를 통해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되는 사업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의 통합·축소·변경·중단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사업효과성 및 운영방식 개선에 필요한 제도 개선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기획예산처, 2007a: 19).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3개의 제도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째, 각 부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정성과 목표관리 관련 항목이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항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정심층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타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타 성과관리제도와의 관계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구성

가. 평가대상사업의 선정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대상기관은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각 부처가 매년 전체 소관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재정사업은 3년을 주기로 평가받고 있다.

평가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단위를 평가단위로 조정하거나 평가실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②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그리고 ③정부 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기 평가를 받았던 사업이 수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평가를 받았던 사업 가운데 성과지표를 보완하였거나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를 받아 기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중대한 변경사유로는 ①여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해소, ②재원분담 방식 등 사업방식 개선, ③성과목표·지표 등 성과계획 개선, ④사업집행과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⑤사업 평가 실시 및 성과분석, ⑥사업의 성과달성도 향상 등이 있다.

나.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1) 평가지표의 축소

공통평가지표가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에는 15개이었는데 2007년에 ‘사업목적 명확성 여부’ 지표와 ‘성과지표 설정여부’ 지표가 삭제되어 13개로 축소

됐고, 2008년에는 ‘재정지출 필요성 여부’ 지표와 ‘고객만족도’ 지표가 삭제되어 11개로 축소됐다. 현재는 공통질문 11개 항목과 7개 사업유형별 질문 1-3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2) 평가지표의 내용과 지표별 배점

평가는 계획(30점) - 집행(20점) - 성과·환류(50점)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획단계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항목과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7개 사업유형은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조사·교육 등 기타사업’이다.

계획단계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묻는 항목과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여부’를 묻는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질문당 7.5점의 배점이 주어져 있어 사업계획 평가항목이 15점을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 특성지표가 있어 추가질문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이 7.5점씩 2개 항목이 아닌 5점씩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항목은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를 묻는 항목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각 항목 당 배점이 7.5점이어서 성과계획 평가항목이 15점을 차지한다. 따라서 계획단계에 대한 평가항목에 총 30점이 주어져 있다.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공통질문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다. 4개 평가항목은 ‘사업추진실태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 ‘계획대로의 집행 여부’, ‘예산절감 또는 집行的 효율성 제고 실적 여부’이다. 부문별 특성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 당 5점씩의 배점이 주어져 있어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에 총 20점이 배정되어 있다. 부문별 특성지표가 있어 추가질문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이 4점 또는 3.33점으로 나뉘는데 집행단계의 평가총점 20점에는 변함이 없다.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항목은 공통질문 3개로만 이루어져 있다. ‘계획된 성과의 달성 여부’에 40점이 주어져 있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의 실시 여부’ 항목과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항목에 5점씩이 주어져 있어 성

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항목에 총 50점이 주어져 있다.

(3) 평가방식과 평가체계의 특징

평가는 ‘예’, ‘아니요’로만 평가되지만, 40점이 배정된 평가지표 3-2 ‘계획된 성과의 달성 여부’ 항목만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요’ 4단계로 평가된다.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항목을 보면, ‘성과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계획의 합리성’ 평가에 15점이 주어져 있고, ‘성과목표 달성도’에 50점이 주어져 있어 총 100점 가운데 65점이 성과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평가지표 1-3에서 ‘아니오’ 일 경우에는 평가지표 1-4 또한 ‘아니오’로 평가되고, 40점이 배정된 평가지표 3-2 또한 평가지표 1-4와 관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성과관리에 유의할 수밖에 없다.

[표 2]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항목·평가지표·지표별 배점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 O C	대형 시설 · 장비 구매	서비스 · 조사 · 행사	출연 · 출자	응자	민간 보조	지자 체 보조	직접 수행
계 획	사 업 계 획 의 타 당 성	1-1.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5.0	5.0	7.5	5.0	7.5	5.0	5.0	7.5
		1-2. 현재 사업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5.0	5.0	7.5	5.0	7.5	5.0	5.0	7.5
		<부문별 특성지표> 1-SOC, 1-시설장비.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	5.0	5.0	-	5.0	-	5.0	5.0	-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 O C	대형 시설 · 장비 구매	서비스 · 조사 · 행사	출연 ·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 체 보조	직접 수행
		1-민간보조.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1-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지 여부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성 과 계 획 의 합 리 성	1-3.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7.5
		1-4.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집 행 의 효 율 성	집 행 의 효 율 성	2-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5.0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5.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5.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5.0
		<부문별 특성지표> 2-SOC. 총사업비 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2-융자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 2-융자2. 자금회수예비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 2-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4.0	-	-	-	3.33	4.0	4.0	-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 O C	대형 시설 · 장비 구매	서비스 · 조사 · 행사	출연 ·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 체 보조	직접 수행
		2-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산 출 / 결 과, 활 용	성 과 목 표 달 성 도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5.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5.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기획재정부

다. 평가등급

평가등급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4단계(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로 이루어졌으나 2008년도에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변경됐다. 변경 전후의 평가점수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급의 변화

이전		⇒		현행	
등급	점수(점)			등급	점수(점)
우수	100~85			매우우수	100~90
다소 우수	84~70			우수	89~80
보통	69~50			보통	79~60
미흡	50미만			미흡	59~50
				매우 미흡	50미만

이 같이 평가등급 체계가 변경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전의 등급체계에 비해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3년 정도 진행되면서 각 부처의 평가에 대한 학습효과가 발생해 ‘미흡’ 등급은 줄어들고 ‘우수’ 등급이 증가하자 평가등급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평가등급 간 변별력을 강화했다.

라. 평가결과의 활용(예산과의 연계)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재정당국이 예산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평가결과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과 연계해 활용되거나 제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우수’, ‘다소 우수’ 평가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단지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만 전년 예산 대비 10%를 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평가등급을 기존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원칙도 바뀌었다. ‘매우 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예산대비 10%를 증액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예산대비 10% 감소, 그리고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예산대비 10%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라는 매우 강력한 예산반영 원칙을 세웠다(기획재정부, 2009: 34-35).

[그림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반영 원칙

2007년 이전		⇒	2007년 이후	
평가등급	적용 기준		평가등급	적용 기준
우수			매우 우수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대비 10% 이상 증액
다소 우수			우수	
보통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보통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
미흡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미흡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대비 10% 이상 삭감
			매우 미흡	전년 예산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

자료: 박민정 외, 2008: 103.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제시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의 예산연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 ‘보통’ 등급 사업 중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치 않음
-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
-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의 경우, 다음 평가주기 도래시 재평가 또는 평가주기 도래전 수정평가 등을 통해 평가등급이 ‘보통’등급 이상으로 조정되기 전까지 매년 예산편성시 마다 10% 삭감원칙 적용(단, 2007년도 이전 평가시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해당부처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되,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편성시 감액 가능

마. 평가실시 절차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을 평가시행 전년도 3월말까지 제시하면 각 부처는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그 후 평가년도 1-2월에 재정사업자율평가 업무담당자 및 재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처는 3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지원단의 평가자문을 받으면서 평가결과를 5월말까지 확인·점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1차 검토의견에 대해 각 부처의 이의제기를 받고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평가등급이 결정된 후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4.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04~2008)

2004년도 평가대상 사업 555개(약 35조원 규모) 가운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우수’는 28개(5%), 70점~84점인 ‘다소우수’가 100개(18.0%), 69~50점인 ‘보통’이 340개(61.3%), 50점 미만인 ‘미흡’은 87개(15.7%)로 나타났다.

[표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단위: 개, %)

평가대상 사업연도	계	우수 (85점 이상)	다소 우수 (84~70점)	보통 (69~50점)	미흡 (50점 미만)	
2004	555 (100.0)	28 (5.0)	100 (18.0)	340 (61.3)	87 (15.7)	
2005	577 (100.0)	30 (5.2)	94 (16.3)	388 (67.2)	65 (11.3)	
2006	585 (100.0)	66 (11.3)	139 (23.8)	349 (59.6)	31 (5.3)	
2007	계	매우 우수 (100~90점)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384 (100.0)	10 (2.6)	44 (11.5)	226 (58.9)	90 (23.4)	14 (3.6)
2008	346 (100.0)	5 (1.4)	14 (4.0)	257 (74.3)	56 (16.2)	14 (4.0)

자료: 기획재정부.

2005년도 평가대상 사업 577개(약 36조원) 가운데 ‘우수’등급(85점 이상)이 30개(5.2%)로 전년도와 비슷하고, ‘다소우수’등급(84~70점)은 94개(16.3%)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보통’등급(69~50점)은 388개(67.2%)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으며, 50점미만 ‘미흡’등급은 65개(11.3%)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평가결과 상으로는 2005년도 평가결과가 2004년도의 평가결과에 비

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도 평가대상 사업 585개(약 41조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우수’는 6.1%, ‘다소 우수’는 7.5%가 증가했으며, ‘보통’은 7.6%, ‘미흡’은 6%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평가결과 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평가등급이 이전의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평가대상사업 384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우수’등급 비율이 감소했고, ‘미흡’등급 비율이 증가했다. 2006년도에 비해 ‘우수’등급은 35.1%에서 14.1%로 감소했고, ‘미흡’등급은 5.3%에서 27.0%로 증가했다.²⁾

2008년도 평가대상사업 346개(23.1조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매우 우수’와 ‘우수’, ‘미흡’등급은 모두 감소했고, ‘매우 미흡’등급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보통’등급이 57.5%에서 74.3%로 큰 폭 증가했다.

2) 2007년도 사업의 경우, 37개 부처 275개 예산사업과 32개 기금의 10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당시에는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분리해 평가했으나 2008년도 사업에는 다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통합해 평가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07년도 평가대상사업의 경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통합해 분석하였다.

Ⅲ. 평가와 정책적 제언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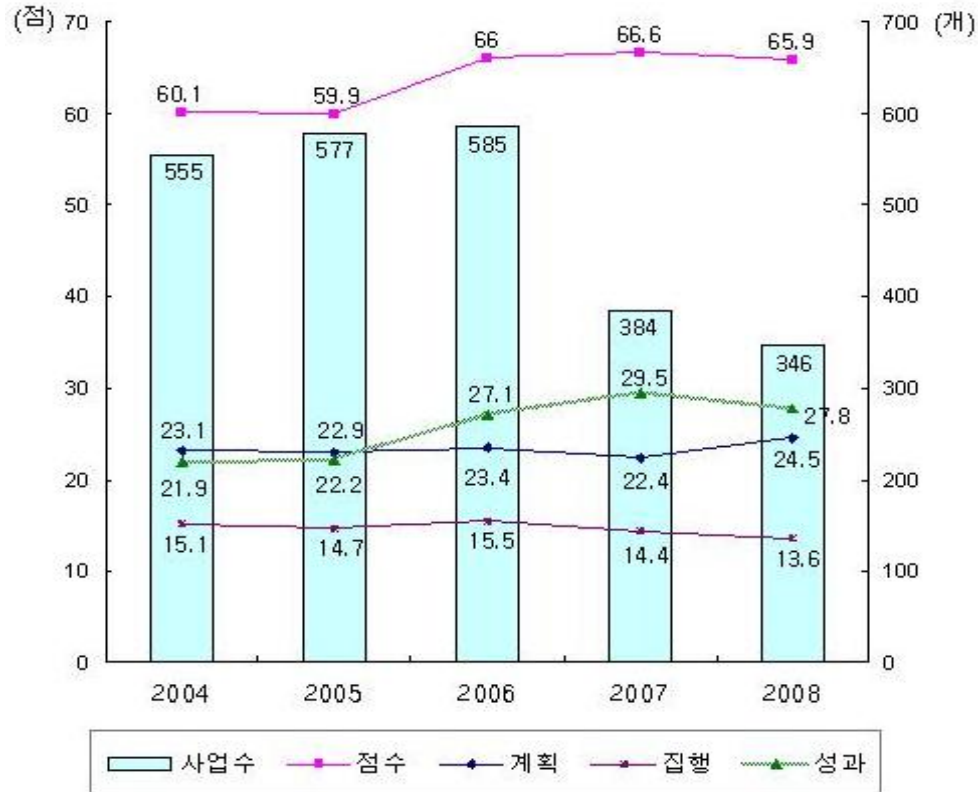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나타난 사업단계별 점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사업의 추진과정상 어느 단계가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단계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보면, 초기 59 -60점에서 65 -66점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평가자인 각 부처가 점차 평가제도에 익숙해지고 평가에 대한 준비가 충실해지면서 각 단계별 평균점수의 합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사업단계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연도	사업수	점수 (100점)	계획(30점)			집행 (20점)	성과 (50점)
				사업계획 (15점)	성과계획 (15점)		
2004	555	60.1	23.1	13.8	9.3	15.1	21.9
2005	577	59.9	22.9	14.3	8.6	14.7	22.2
2006	585	66.0	23.4	14.2	9.2	15.5	27.1
2007	384	66.6	22.4	14.2	8.2	14.4	29.5
2008	346	65.9	24.5			13.6	27.8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4] 사업단계별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각 사업단계별 점수를 보면, 총 30점 만점의 계획단계 평가에서 22.4 - 24.5점 사이의 점수를 얻고 있다. 이를 백분비율로 환산했을 때 계획단계의 총 점 대비 74.7 - 81.2%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계획단계에 대한 평가점수는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계획단계에 대한 평가는 2가지로 나뉘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총 15점 만점에서 13.8 - 14.3점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는 총 15점 만점에서 8.2 - 9.3점을 받고 있는데 이를 백분비율로 환산하면 55 - 62% 밖에 되지 못한다. 즉 계획단계에 대한 평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결과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있지만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오고 있어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20점 만점의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13.6 -15.5점 사이의 점수를 얻고 있는데 이를 백분비율로 환산하면 68.0 - 77.5%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연도별로 집행단계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비해 점수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21.9 -29.5점의 점수를 얻고 있는데 이를 백분비율로 환산하면 43.8 - 59%에 해당한다.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 점수가 계획단계,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점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과·환류단계의 평균점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초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부처의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고, 나아가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부족

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따라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사업을 평가해 효율적인 사업은 예산증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성이 아주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소하거나, 사업폐지를 검토하고, 또는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도입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평가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을 때에 제도개선도 가능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가 자료를 제출한 2007년도 평가사업의 2009년도 예산에의 반영여부를 등급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³⁾

[표 5] 2007년도 평가대상사업의 2009년도 예산에의 반영 현황

(단위: 개)

2007년도 평가등급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규모의 변동 여부		
	증가	변동 없음	감소
매우 우수(8개)	4	0	4
	‘매우 우수’ 10개 사업 가운데 자료 불명확한 2개 사업 제외		
우수(41개)	27	1	13
	‘우수’ 44개 사업 가운데 자료 불명확한 3개 사업 제외		
보통(210개)	142	10	58
	‘보통’ 226개 사업 가운데 자료 불명확한 16개 사업 제외		
미흡(85개)	22	3	60
	‘미흡’ 90개 사업 가운데 자료 불명확한 5개 사업 제외		
매우 미흡(13개)	1	0	12
	‘매우 미흡’ 14개 사업 가운데 자료 불명확한 1개 사업 제외		

2007년도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8개 사업의 2009년 예산에의 반영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50%인 4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증가했고, 50%인 4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우수’등급을 받은 41개 사업 가운데 2/3에 해당되는 27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증가했지만, 1/3에 해당되는 13개 사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흡’등급을 받은 85개 사업 가운데 26%인 22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오히려 증가했고, 71%인 60개 사업은 감소했다.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13개 사업 가운데 92%인 12개 사업의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 8%에 해당되는 1개 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보통’ 등급을 받은 210개 사업 가운데 68%에 해당되는 142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증가했고, 28%에 해당되는 58개 사업은 감소했다.

3) 2007년 평가대상 사업 384개 가운데 자료가 불명확한 27개 사업은 제외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원칙에 일부는 부합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보통’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며, ‘미흡’ 등급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하며,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0% 삭감하거나 사업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원칙이다.

그런데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예산이 감소된 경우가 많고, 나아가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 예산을 증액치 않은 것이 원칙인데도 2/3 이상의 사업이 예산이 증액됐고, 28% 사업이 예산이 감소했다. 그리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1/4 이상의 사업들이 예산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했고,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경우가 있다. 물론 ‘미흡’과 ‘매우 미흡’을 받았던 사업들의 예산규모가 감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결과와 예산이 연계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우수’와 ‘보통’ 등급의 사업으로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재정사업평가 결과와 예산이 연계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사례를 살펴본다. 2007년도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104개 사업 중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은 33건이나 되며, 이는 전체의 32%에 이른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78-82).

[표 6] 2007년도 ‘미흡’ 등급 사업 중 10%이상 삭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008 예산 (A)	2009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증액사유
국토 해양부	부산지하철건설(교특)	1,236.0	1,530.0	294.0	23.8%	집행부진 치유 계속사업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008 예산 (A)	2009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증액사유
교육 과학 기술부	역사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	225.6	223.0	-3	-1.1%	
국방부	국방홍보원 운영	277.4	263.2	-14	-5.1%	
	과학화 훈련	401.6	485.5	83.8	20.9%	필수확대사업
기상청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운영	27.3	32.	5.3	19.4%	독도영토관리 대책사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1,397.7	1,392.7	-5	-0.4%	
농림 수산 식품부	농촌공사시설관리	1,703.0	1,627.2	-76	-4.4%	
	농업생산기반정비(균특)	3,380.2	3,192.1	-188	-5.6%	
	친환경축산지원 (민간보조)	348.0	627.7	279.6	80.3%	국제곡물가 상승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234.6	269.8	35.2	15.0%	쇠고기이력 추적제 비용 반영
	친환경축산지원(융자)	389.0	376.0	-13	-3.3%	
농촌 진흥청	농가경영컨설팅	12.1	11.1	-1	-8.5%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상품개발및유통지원	92.5	88.1	-4	-4.8%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지원	85.3	81.2	-4	-4.8%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40.0	40.0	-	0.0%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237.4	272.6	35.2	14.8%	마무리단계의 사업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11.3	10.2	-1	-9.9%	
법무부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	271.7	258.7	-13	-4.8%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LPG차량 지원	341.8	341.8	-	0.0%	
	고엽제환자 검진 등	44.2	44.0	-0.2	-0.5%	
보건	구강보건사업	132.7	161.3	28.6	21.5%	노인틀니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2008 예산 (A)	2009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	증액사유
복지 가족부						단가 현실화
	성병및에이즈관리	9.3	88.3	-7	-7.3%	
	부랑인 지원	195.3	222.7	27.4	14.0%	인건비 현실화
여성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2.0	2.0	-	0.0%	
외교 통상부	한국학기반확대	90.2	85.0	-5	-5.7%	
지식 경제부	보편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창구망 운영 지원	3,109.6	3,180.5	70.9	2.3%	인건비성 사업
중소 기업청	여성·장애인기업지원	67.5	72.5	5.0	7.3%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보건 복지 가족부	우주체험센터 조성 사업	88.0	102.0	14.0	15.9%	집행부진 해소
통일부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식량차관)	1,974.0	3,520.0	1,546.0	78.3%	남북협력 사업
국토 해양부	항만건설 민자유치 및 글로벌 기업유치	41.2	46.7	5.5	13.3%	국가간지원 약속(베트남)
행정 안전부	소도읍 육성사업	464.0	551.0	87.0	18.8%	지자체별 지원
환경부	환경기초시설(한강)	1,729.0	1,594.0	-135	-7.8%	
	유해화학물질관리	127.0	117.0	-10	-7.9%	
합 계	33개 사업	18,887.6	20,925.4	2,037.8	10.8%	

* 2009예산안은 수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규모임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78-81.

일부 ‘미흡’ 등급이 부여된 사업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된 사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집행부진 등의 평가미흡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국가간 지원 약속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지자체별 지원 총액 및 연차별 소요가 결정되어 있어 일률적인 삭감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 그러나 미흡등급 사업 가운데 예산안 규모가 전년도 대비 10% 이하로 삭감된 경우를 보면, 특

별한 사유 없이 ‘삭감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시 ‘삭감기준’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국가간 지원 약속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흡’ 등급 사업의 예산안 10% 이상 삭감의 원칙이 가능하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삭감기준의 준수 노력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효과적인 성과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사업의 성격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었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 사업성과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사업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를 모두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을 구현하고 지속적인 사업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나. 평가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의 불일치성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몇 차례 통계분석이 시도됐다. 일부 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도 해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박노욱 외(2008)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변화율을 평가등급별로 평균값을 계산한 후 평가등급과 부처예산요구 증가율, 정부예산 증가율, 국회승인예산 증가율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의 경우에는 부처, 정부, 국회의 예산증가율이 평가등급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6년의 경우 2004년과 2005년과 같이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가 예산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미흡’ 등급의 사업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승인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예산요구액과 정부예산 증가율과 평가결과 사이에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결국 박노욱 외(2008)의 분석결과는 2004 - 2006년에는 평가결과와 예산이 밀접하게 또는 어느 정도 연계되고 있었지만 2007년에는 그러한 연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평가결과와 예산 간에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정 외(2008)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개년 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하였다(박민정 외, 2008: 94-109). 먼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시행이 사업예산 총액 및 예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시행이 전체 사업예산총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예산증가율을 낮추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결과는 평가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정사업자율평가가 개별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 사업의 예산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량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여부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점수 및 등급과 사업예산규모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평가점수 및 등급이 높아질수록 사업예산 규모가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즉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3개년 평가점수 및 등급을 독립변수로 하고, 예산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과 2007년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총합점수 및 등급이 사업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2006년의 경우에는 평가총합점수 및 등급이 예산증가나 감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박노욱 외(2008)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박노욱 외(2008)는 2004년과 2005년의 평가결과는 예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2006년 결과는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2007년의 평가결과는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민정 외(2008)는 2005년과 2007년은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만 2006년의 평가결과는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여부는 분석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그 관계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06a; 2007)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한해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06a: 231-235; 2007: 219-223). 2005년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2006년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가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가점수와 각 사업별 예산규모의 증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2005년 자율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11개 사업 가운데 2007년도에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6개이고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4개에 이른다. ‘다소 우수’를 받은 19개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다. 2006년의 경우에도 ‘우수’ 평가를 받은 14개 사업 가운데 2008년도에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10개이고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3개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6개 사업은 2007년 예산규모가 모두 감소했지만, 2006년의 경우에는 ‘미흡’ 평가를 받은 5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만 예산이 감소했고, 1개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증가했다.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10%이상 사업비를 삭감하자는 원칙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들이 대거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평가점수와 예산증감률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와 연계시 국회에서의 검증장치 필요

가. 국회예산결정과정에서 평가결과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예산심의 및 결정과정에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회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박민정 외, 2008: 109-115).

먼저 2005년과 2006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등급 별 국회예산심의 결과를 보면 평가등급과 국회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던 사업이 55개인데 이 가운데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감소한 사업이 3개이고, 오히려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이 6개이다. ‘우수’ 등급을 받았던 사업은 27건인데 이 가운데 정부안보다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것은 2건이고 증가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던 사업은 29개인데 이 가운데 2개 사업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규모가 증가했다. 그리고 ‘우수’ 등급을 받았던 64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이, ‘다소 우수’ 등급을 받았던 133개 사업 가운데 16개 사업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규모가 감소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놓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표 7] 2005-200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급과 국회예산조정

(단위: 개)

연도	등급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계
		정부안보다 예산감소	정부안과 동일	정부안보다 예산증가	
200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	3	46	6	55
	보통	24	311	33	368
	다소 우수	2	75	8	85
	우수	2	24	1	27
	계	31	456	48	535
연도	등급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계
		정부안보다 예산감소	정부안과 동일	정부안보다 예산증가	
200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	5	22	2	29
	보통	46	249	40	335
	다소 우수	16	96	21	133
	우수	11	47	6	64
	계	78	414	69	561

자료: 박민정 외, 2008: 110.

나.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행정부 내부의 필요와 국회의 동의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8조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전적으로 정부 내부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평가방식을 결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여부와 활용의 정도도 정부 내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성과관리의 일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법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 내부에서 평가대상을 결정하고 평

가결과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의 평가결과를 고려하거나 수용하여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국회와 정부 모두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계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국회예산심의시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에 연계시키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내부의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자율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반영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할 때 각 부처는 평가대상 사업의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 결과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정부입장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있듯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는 국회입장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를 작성할 때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평가 자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사업평가등급기법)에 대해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정부책임처)는 PART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부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업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 시작에서부터 의회의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예산편성 및 감사에 있어서 PART 정보를 어떻게 최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위원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GAO, 2004a: 4; 공동성 외, 2007: 38; 윤기웅 외, 2008: 96). 또한 GAO는 PART의 제도운영에 따른 평가역량 문제, 지침서의 보완·개선, 평가정보의 유무 및 범위

문제에의 대처, 사업선정시 유사사업과의 비교 등을 제안하면서 ‘의회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공동성 외, 2007: 3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평가지표에 따라 각 부처가 평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행정부가 먼저 평가한 후 평가 자료와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게 했을 때에 국회와 행정부 모두 평가결과를 활용할 하는 데에 적극적일 수 있다.

끝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조항에 “평가결과를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시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예산과정에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자율평가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할 때 국회차원에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

국회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심의시 활용할 때에는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이외의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재정사업이 엄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계획(사업계획/성과계획) - 관리 - 성과/환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단계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중복여부,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 성과지표 목표치의 합리성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 목표설정의 합리성, 대안분석의 적정성, 최적안 개발 등 4가지 부문에 걸쳐 8가지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8] 자율평가 결과를 국회예산심의에 활용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항목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가?
	사회적 수요분석의 적정성	사회적 수요(정책문제, 이해관계,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목표 설정의 합리성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사업내용이 사업의 임무와 목적 등에 비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의 결과 지향성	사업의 성과목표가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대안 분석의 적정성	사업규모 설정 기준의 합리성	사업추진의 배경이 된 정책문제나 사회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사업규모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사업추진의 부정적 결과 분석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와 대응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최적안 개발	위험 및 불확실성 관리계획	미래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비하고 있는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	사업계획 및 집행단계에 따른 역할분담과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사업의 타당성은 해당 사업이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사회적 수요분석의 적정성 측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목표설정의 합리성은 사업목표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는 사업목적에의 부합성과 성과목표의 결과지향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분석의 적정성은 채택된 대안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는 사업규모 설정기준의 합리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최적안의 개발은 다양한 상황변화를 감안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위험 및 불확실성 관리계획과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설정된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가)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평가목적	사업추진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판단기준	‘예’	- 사업추진 근거가 법에 명시된 경우 - 사업명에 불구하고 법의 내용과 사업내용의 연관성이 큰 경우
	‘아니오’	- 시행령, 예규, 고시 등에 근거하는 경우 - 법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법규내용과 사업내용의 연관성이 약한 경우 -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사회적 수요분석의 적정성

평가목적	해당 사업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예’	-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문제나 이해관계 또는 필요성을 분석하되(공통사항), - 추정근거나 분석방법 등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경우
	‘아니오’	- 사회적 문제, 이해관계 및 필요성 등을 분석하지 않은 경우 - 추정근거 등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2) 목표설정의 합리성

(가)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평가목적	사업내용이 사업의 임무(mission)와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판단기준	‘예’	-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나 필요성 등과 같은 사회적 수요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 사업목적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의 연관성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된 경우
	‘아니오’	-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가 관련성이 적은 경우 - 해당 사업의 목적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나) 성과목표의 결과지향성

평가목적	사업의 결과(outcomes)를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판단기준	‘예’	- 사업목표와 직접적이고도 의미 있게 연관된 결과 지표(outcome measures)를 설정한 경우 - 산출지표(output measures)를 제시하되, 해당 산출물이 바람직한 결과(outcomes)를 가져온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아니오’	- 사업목표와 직접적이고도 의미 있게 연관된 결과 지표(outcome measures)가 아닌 경우 - 산출지표(output measures)를 적용하면서도 결과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결과(outcomes)와 무관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경우 -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3) 대안분석의 적정성

(가) 사업규모 설정기준의 합리성

평가목적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나 사회적 수요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판단기준	‘예’	-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나 필요성 등과 같은 사회적 수요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 사업규모가 사회적 수요분석 결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아니오’	- 사업규모의 설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규모와 사회적 수요분석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회적 수요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추진에 따른 부정적 결과 분석

평가목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의 사전분석 여부	
판단기준	‘예’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시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경우 - 사업계획에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 경우 -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경우
	‘아니오’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시 부정적 결과를 누락, 축소, 은폐시킨 경우 -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응체계가 부재한 경우 -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형식적인 경우

(4) 최적안 개발

(가) 위험 및 불확실성 관리계획

평가목적	미래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의 수립 여부	
판단기준	‘예’	- 사업추진의 핵심적 영향요소를 분석하고, 요소별 변동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한 경우
	‘아니오’	- 사업추진의 핵심적 영향요소에 대한 식별 및 분석이 누락된 경우 - 영향요소별 변동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성

평가목적	사업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시 여부	
판단기준	‘예’	- 핵심적인 결과달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책임자에 대한 성과표준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계량화하고 있는 경우 -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자가 존재할 때, 해당 협력자의 성과표준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설정한 경우
	‘아니오’	-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주체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별 성과표준과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부처자체평가 결과와 재정당국의 평가 간의 차이 축소 필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의해 각 사업의 점수와 등급을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내 최종 점검·확인을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최종 점검·확인 결과 간에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07년도 평가대상 사업 가운데 각 부처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던 69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3단계 아래인 ‘미흡’ 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59개 사업, 4단계 아래인 ‘매우 미흡’ 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10개 사업에 이른다.

[표 9] 2007년도 부처자체 평가와 재정당국 최종 평가 간의 차이(매우 우수 등급 국한)

부처	사업명	부처자체평가		주관부처(기획재정부) 평가	
		평가점수	평가등급	최종점수	최종등급
통일부	3.민족공동체회복지원대출(식량차관)	100.0	매우우수	57.5	미흡
통일부	4.민족공동체회복지원대출(여건조성)	100.0	매우우수	55.0	미흡
외교부	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	95.0	매우우수	45.8	매우미흡
국방부	국방홍보원 운영	100.0	매우우수	55.0	미흡
법무부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	100.0	매우우수	52.7	미흡
행자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96.7	매우우수	59.2	미흡
행자부	소도읍 육성사업	96.0	매우우수	52.0	미흡
교육부	유아교육지원	96.7	매우우수	49.3	매우미흡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	96.7	매우우수	56.7	미흡
문화부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100.0	매우우수	56.8	미흡
문화부	종교문화 기반 구축	96.0	매우우수	36.5	매우미흡
문화부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96.0	매우우수	59.8	미흡
문화부	1. 관광자원활성화	92.0	매우우수	53.2	미흡
문화부	2. 관광상품개발및유통지원	96.7	매우우수	49.7	매우미흡
문화부	3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지원	100.0	매우우수	52.7	미흡

부처	사업명	부처자체평가		주관부처(기획재정부) 평가	
		평가점수	평가등급	최종점수	최종등급
과기부	1.고경력및퇴직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활용	93.0	매우우수	54.3	미흡
과기부	2.「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96.7	매우우수	51.7	미흡
농림부	농촌공사시설관리	92.7	매우우수	57.7	미흡
농림부	농업생산기반정비(균특)	96.0	매우우수	57.0	미흡
농림부	1.과수경쟁력제고	93.4	매우우수	55.0	미흡
농림부	3.과수경쟁력제고(응자)	96.7	매우우수	58.4	미흡
농림부	2.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93.4	매우우수	57.0	미흡
정통부	공공정보화사업추진	93.3	매우우수	43.3	매우미흡
정통부	정보접근기반조성	91.7	매우우수	51.7	미흡
정통부	보편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창구망 운영 지원	96.7	매우우수	54.2	미흡
산자부	고령친화산업 기반확충 및 진흥	100.0	매우우수	58.3	미흡
산자부	일반광육성사업	100.0	매우우수	57.7	미흡
산자부	한-산유국간 국제협력	100.0	매우우수	56.3	미흡
산자부	광해방지비	96.7	매우우수	56.7	미흡
산자부	4.전원개발응자지원	100.0	매우우수	55.0	미흡
복지부	노인요양 생활시설 신축	90.0	매우우수	52.8	미흡
복지부	2.암검진및의료비지원	100.0	매우우수	58.3	미흡
복지부	4.구강보건사업	92.7	매우우수	51.0	미흡
복지부	6.성병및에이즈관리	100.0	매우우수	55.0	미흡
복지부	8.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재평가)	96.3	매우우수	54.3	미흡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	90.0	매우우수	55.8	미흡
환경부	하수도시설 확충	93.3	매우우수	58.5	미흡
환경부	5.환경산업육성사업(응자)	100.0	매우우수	53.3	미흡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100.0	매우우수	54.3	미흡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92.7	매우우수	44.7	매우미흡
노동부	자활직업훈련	100.0	매우우수	50.5	미흡
노동부	1.산재근로자복지	100.0	매우우수	48.3	매우미흡
노동부	5.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100.0	매우우수	55.0	미흡
건교부	지방공항 건설	100.0	매우우수	56.8	미흡
건교부	부산지하철건설(교특)	96.7	매우우수	55.5	미흡
건교부	자동차제작결함조사(일반)	95.0	매우우수	58.3	미흡
해수부	양식시설기반 및 기자재 확 충사업	100.0	매우우수	49.3	매우미흡
여성부	가족친화 환경 조성	100.0	매우우수	50.8	미흡

부처	사업명	부처자체평가		주관부처(기획재정부) 평가	
		평가점수	평가등급	최종점수	최종등급
여성부	1.여대생캐리어개발지원	100.0	매우우수	54.0	미흡
여성부	2.여성자원활동지원	100.0	매우우수	45.8	매우미흡
여성부	3.결혼이민자가족지원	100.0	매우우수	55.0	미흡
보훈처	국가유공자 LPG차량 지원	91.7	매우우수	52.5	미흡
보훈처	고엽제환자 검진 등	96.7	매우우수	56.7	미흡
경찰청	교통안전교육 지도·홍보	95.0	매우우수	56.0	미흡
문화재청	사적 보존관리	100.0	매우우수	58.3	미흡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관리 및 기록	96.7	매우우수	56.7	미흡
문화재청	유적관리소 종합정비 및 수 입대체경비	91.7	매우우수	59.2	미흡
문화재청	3.매장문화재출토유물보관센 터건립	100.0	매우우수	59.3	미흡
산림청	산림조합 육성	100.0	매우우수	53.3	미흡
산림청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100.0	매우우수	56.7	미흡
중기청	여성·장애인기업지원	90.0	매우우수	52.7	미흡
식약청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95.0	매우우수	55.0	미흡
청소년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96.7	매우우수	52.2	미흡
청소년위	청소년 가출 예방	100.0	매우우수	52.0	미흡
청소년위	청소년 폭력 예방	95.0	매우우수	48.1	매우미흡
청소년위	우주체험센터 조성 사업	96.0	매우우수	54.7	미흡
청소년위	청소년 지도사 양성 지원	90.0	매우우수	57.0	미흡
청소년위	1.청소년참여활동지원	96.7	매우우수	57.7	미흡
방송위	3.국악방송지원	93.3	매우우수	57.1	미흡
2007년도 부처자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69개 사업이 주관부처(기획재정부)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미흡’ 59개 사업, ‘매우미흡’ 10개 사업으로 확정					

또한 2008년도 평가대상 사업 가운데 각 부처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던 4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3단계 아래인 ‘미흡’ 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36개 사업, 4단계 아래인 ‘매우 미흡’ 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7개 사업에 이른다.

[표 10] 2008년도 부처자체 평가와 주관부처 최종 평가 간의 차이(매우 우수 등급 국한)

부처	사업명	부처자체평가		주관부처(기획재정부) 평가	
		점수	등급	점수	등급
교육과학기술부	인재개발 정책추진 활성화	92.0	매우우수	47.8	매우미흡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 과학교육 활동 지원	91.0	매우우수	56.8	미흡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평가 운영	96.0	매우우수	56.8	미흡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92.0	매우우수	36.3	매우미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00.0	매우우수	55.8	미흡
교육과학기술부	교수 학습체제 혁신	100.0	매우우수	36.3	매우미흡
국가보훈처	보훈기념	90.0	매우우수	52.8	미흡
국방부	환경시설 개선 및 운영	90.0	매우우수	53.3	미흡
국방부	전직 지원	100.0	매우우수	55.8	미흡
국토해양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균특)	100.0	매우우수	57.8	미흡
국토해양부	물류산업 지원(일반)	100.0	매우우수	52.8	미흡
국토해양부	사업용운전자 교통안전체협교육장 건설	100.0	매우우수	58.3	미흡
국토해양부	연안환경관리	96.0	매우우수	51.8	미흡
국토해양부	인천도시엑스포	100.0	매우우수	51.3	미흡
국토해양부	해양생물연구 지원	100.0	매우우수	54.3	미흡
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고용보협기금)	100.0	매우우수	56.8	미흡
노동부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92.	매우우수	50.0	미흡
노동부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	95.0	매우우수	48.3	매우미흡
노동부	여성고용지원 융자	96.7	매우우수	55.8	미흡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인력 양성	95.0	매우우수	56.8	미흡
농림수산식품부	재해예방시설지원(균특)	100.0	매우우수	54.3	미흡
농림수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100.0	매우우수	54.3	미흡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	95.0	매우우수	50.3	미흡
문화재청	남해안 관광벨트	92.0	매우우수	52.8	미흡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92.0	매우우수	55.0	미흡

부처	사업명	부처자체평가		주관부처(기획재정부) 평가	
		점수	등급	점수	등급
문화체육 관광부	공예산업 육성	96.7	매우우수	55.0	미흡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96.7	매우우수	55.0	미흡
문화체육 관광부	복지관광 활성화	96.0	매우우수	56.8	미흡
방송통신 위원회	해외방송 교류	95.0	매우우수	38.3	매우미흡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100.0	매우우수	54.3	미흡
중소기업청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100.0	매우우수	54.3	미흡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제공	100.0	매우우수	53.3	미흡
지식경제부	무역조정지원	96.0	매우우수	55.3	미흡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사업	95.0	매우우수	50.8	미흡
지식경제부	선진형 무역구제 체제 구축 사업	100.0	매우우수	55.8	미흡
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효율향상(용자)	100.0	매우우수	55.0	미흡
환경부	야생동식물 보호	91.7	매우우수	37.9	매우미흡
환경부	산업단지 토양관리	100.0	매우우수	55.8	미흡
환경부	폐기물 감량 홍보 및 지원	96.0	매우우수	48.3	매우미흡
환경부	한강수계 기타 수질개선 지원	95.0	매우우수	50.8	미흡
환경부	금강수계 기타 수질개선 지원	100.0	매우우수	55.8	미흡
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00.0	매우우수	52.8	미흡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00.0	매우우수	52.8	미흡
2008년도 부처자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43개 사업이 주관부처(기획재정부)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미흡’ 36개 사업, ‘매우 미흡’ 7개 사업으로 확정					

이 같은 결과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 같은 현상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평가대상 사업을 맡고 있는 각 부처와 자율평가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사이에 평가결과를 놓고 줄다리기가 극심하고 그 결과 행정력의 소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자체평가 결과의 관대화

경향은 사업담당부처의 성과마인드를 제고시키지 못하고 해당 부처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의 자체평가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엄격히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 성과개선 및 예산절감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는 2가지 사업유형, 즉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간접수행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SOC, 시설·장비, 그리고 기타직접 사업 등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출연출자, 융자,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사업 등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간접수행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유형을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업으로 구분해 평균점수를 구해보면, 직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가 간접수행사업의 그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2004년도 직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가 61.4점인 반면 간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는 59.25점이었고, 2005년도 직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는 62.9점으로 간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 58.18점 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2006년도 직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는 67.1점으로 간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 64.9점보다 높았고, 2007년도 직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가 69.9점인 반면 간접수행사업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65.5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08년에도 지속되어 직접수행사업의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69.5점으로 나왔지만 간접수행사업의 평균점수는 64.1점에 불과했다.

[표 11] 사업유형별(직접수행사업/간접수행사업) 평가 결과

(단위: 점)

연도	구분	사업유형	사업수	총점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
2004	직접수행	SOC	54	62.0	13.8	12.5	11.9	23.9
		시설장비	8	60.5	13.2	10.6	14.0	22.7
		기타직접	144	61.7	14.3	10.0	15.6	21.8
	간접수행	출연출자	49	59.8	13.7	8.0	15.4	22.8
		융자	68	58.8	13.2	8.2	15.1	22.4
		지자체보조	109	58.8	13.8	8.3	14.9	21.7
		민간보조	123	59.6	13.4	9.0	16.2	20.9
2005	직접수행	SOC	51	65.4	14.6	10.3	13.9	26.5
		시설장비	9	62.2	13.9	10.0	15.6	22.8
		기타직접	170	61.1	14.6	8.8	15.9	21.8
	간접수행	출연출자	46	57.7	13.0	7.7	13.9	23.0
		융자	43	58.5	14.1	7.9	14.1	22.3
		지자체보조	101	56.5	14.1	8.9	13.2	20.2
		민간보조	157	60.0	14.3	8.3	15.0	22.3
2006	직접수행	SOC	22	65.6	14.8	11.6	14.9	24.2
		시설장비	6	66.7	15.0	11.7	16.7	23.4
		기타직접	187	69.0	14.3	10.1	16.1	28.5
	간접수행	출연출자	69	70.0	14.4	10.2	15.0	30.3
		융자	42	63.6	14.2	8.0	14.5	26.9
		지자체보조	106	62.2	14.2	8.6	14.2	25.3
		민간보조	156	63.8	13.8	8.0	16.3	25.7
2007	직접수행	SOC	15	65.7	13.8	10.5	10.3	31.2
		시설장비	5	73.5	15.0	13.5	14.0	31.0
		기타직접	83	70.5	14.7	10.2	13.3	32.3
	간접수행	출연출자	40	65.6	14.6	60.4	16.3	28.3
		융자	34	65.5	13.7	7.9	16.5	27.4
		지자체보조	83	66.4	14.8	8.0	13.6	30.0
		민간보조	124	64.5	13.5	7.1	14.9	28.0
2008	직접수행	SOC	7	69.4	26.8		13.1	29.5
		시설장비	6	70.5	26.3		13.3	30.9
		기타직접	110	68.6	25.2		13.3	30.1
	간접수행	출연출자	59	63.8	23.6		15.0	25.2
		융자	0	-	-		-	-
		지자체보조	64	64.2	24.7		12.7	26.8
		민간보조	120	64.4	23.7		14.2	26.6

자료: 2004 - 2007년까지는 박노욱 외, 2008: 103-105쪽, 2008년은 새로이 작성

물론 직접수행 사업이 간접수행 사업에 비해 사업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은 결과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사업유형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분석할 경우에도 직접사업의 경우에 우수 및 다소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수의 비율이 간접사업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사업유형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사업유형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공동성 외, 2007: 27). 따라서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항목, 질문문항 및 가중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핵심적인 평가지표의 제외로 자율평가제도의 형식화 우려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평가지표가 도입 초기에 비해 그 수가 20% 이상 줄어들었다. 2005년 처음 실시했을 때 공통평가지표가 15개 이었는데 2007년에 사업계획 범주의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와 성과계획 범주의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라는 2개의 평가지표가 제외되어 13개로 축소됐다. 그리고 2008년에 다시 사업계획 범주의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와 성과·환류 범주의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라는 2개의 공통지표가 제외되었고 현재는 11개의 평가공통지표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변별력이 낮고 평가실익이 없는 평가지표를 제외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부가 삭제한 평가지표들은 ‘사업목적의 명확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재정지출의 필요성’, 그리고 ‘이해관계인 만족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다. 사업평가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를 점차 형식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마저 갖게 된다. 특히 피평가대상인 각 부처들의 평가부담을 의식해 사업목적의 명확성 관련 지표와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그리고 재정지출의 필요성 등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만족도’ 조사도 정부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도 동시에 조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핵심요소들이 제외된 현재의 평가지표를 보면, ‘계획’범주에는 사업의 유사·중복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성과지표의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성, 목표치의 합리성 등 각 부처들이 쉽게 답변을 낼 수 있는 항목이자 삭제된 평가항목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표들만을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계획’ 관련 평가지표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7개의 지표를 4개로 축소한 것은 사실상 평가의 실효성 확보 차원보다는 피평가부처의 불만을 의식해 평가준비의 편의성을 높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지표의 축소에 대해 정부가 정부업무평가제도와 통일할 기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기획예산처, 2007b)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2008년도 지침/매뉴얼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와 통일을 기하고 평가의 중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부 질문문항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도리어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고, 삭제된 질문문항은 새로운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질문문항이므로 삭제하는 데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윤기웅 외, 2008: 109).

재정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은 명확히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이다. 아울러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여부는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묻고 평가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변별력이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7. 평가결과를 예산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조정할 필요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평가시행 전년도 3월말까지 평가지침이 각 부처에 시달되고, 4월말까지 평가대상사업이 선정된다. 그 후 각 부처는 선정된 사업을 평가년도 3월말까지 자체평가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5월말까지 확인·점검한 후 6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자율평가 결과가 6월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6월말까지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결과통보에서부터 예산요구서 제출까지의 시일이 너무 짧아 각 부처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작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지만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통보시기를 앞당겨 평가결과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 때부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예산요구서 제출 2개월 전까지는 평가결과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소관부처의 예산요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액 조정과정에서는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만 하면 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된다.

8.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필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매뉴얼을 보면,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개념을 “사업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재정당국이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고, 평가결과도 “우수 이상 등

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에 활용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기획재정부, 2008: 3).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이고 평가결과 또한 예산의 증액 또는 삭감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 매뉴얼은 또한 추진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까지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명기해놓고 있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사업별 제도개선에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예산심사에만 활용되고 있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도 평가결과, 기획재정부는 총 1,265건의 제도개선 시정권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35.8%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업방식개선에 관한 내용은 16.2%에 그쳤다. 이외에 집행관리 강화가 14.9%이었고, 사업평가방식 및 환류체계개선은 33.1%였다(박노욱, 2009: 22-2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법령개정, 사업관리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늘리고, 각 부처의 권고사항 이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각 부처가 자율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실적을 평가주무기관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2005년 도입된 이래 5번이나 실시되었고 향후에도 실시될 예정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의 재정사업을 계획·집행·성과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공통체크리스트와 사업유형별 개별질문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과관리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평가결과는 정부의 예산심사시에 예산의 증액 및 감액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실시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제도운영 현황을 8가지 측면에서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재정사업자율평가제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인 자율평가결과의 예산연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는 정부 내부의 사업평가제도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국회예산심의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와 함께 향후 국회에서 활용되 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과 국회차원에서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 평가지표 형식으로 검토하였다.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5년 동안의 평가점수를 사업의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로 나누어 검토했을 때, 각 부처의 ‘성과계획’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오고, ‘성과·환류’단계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운영 및 각 부처의 사업관리에 있어서 성과관리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가 불명확하고, 몇몇 통계분석을 볼 때에도 자율평가결과의 예산연계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시와 정부의 예산편성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행정부 내부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평가지표 작성 및 평가결과 산출시 국회와의 협의는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시 사업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재정사업자
 율평가 결과의 국회예산심의회의 반영 여부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있고, 국
 회와 정부 모두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차원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활용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
 과를 국회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국회는 국회입장에서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평가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평가지표 작성시 국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조항에 “평가결
 과를 정부의 예산안 및 국회의 예산심의시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
 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각 부처의 자체평가지 평가점수 부풀리기가 매우 심하므로 이를 시정
 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의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접수행사업과 간접수행사업 사이의 평가결과를 보면 직접수행사업
 의 평가점수가 간접수행사업의 그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사업유형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입 초기의 평가지표 가운데 ‘사업목적의 명확성’, ‘성과목표/성과
 지표의 결과지향성’, ‘재정지출의 필요성’, 그리고 ‘이해관계인 만족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 삭제되었다. 사업평가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지표들이 삭제되고 있어 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점차 형식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마저 갖게 된다. 사업평
 가에 반드시 필요한 지표들을 변별력이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쉽게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평가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
 제된 지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일곱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6월에 통보되고 각 부처도 6월말까지 예
 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각 부처 입장에서는 자율평가 결과를 각 부처의 예
 산요구서에 반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소한 자율평가 결과
 가 예산요구서 제출 2개월 전에 통보될 수 있도록 평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도입 목적에는 평가결과의 예산반영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사업별 제도개선이라는 목적도 있는데 현실에서 후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향후에는 평가결과에 더 많은 제도개선 권고와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각 부처의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실적을 평가주관기관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국회예산정책처. (2006a). 「2007년도 예산안 분석 II」.
- _____. (2006b). 「200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_____. (2007). 「2008년도 예산안 분석 II」.
- 기획예산처. (2004). 「2005년도 예산편성안지침 및 기준」.
- _____. (2007a). 「'07년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 _____. (2007b).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재정운용평가 매뉴얼: 2007년도 재정성과부문」.
- _____. (2007c). <http://www.mpb.go.kr>, “재정성과관리제도”, <재정혁신>, 2007. 6. 10.
- 기획재정부. (2008).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 _____. (2009).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공동성·방문규·윤기웅. (2007).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27-56.
- 박노옥. (2007).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성과관리제도”, 「예산춘추」, 2007년 봄호, 국회예산정책처.
- _____. (2009).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자료.
- 박노옥·원종학·김진·박명호. (2008).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박민정·박중훈. (2008). 「예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윤기웅·공동성. (200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한국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 GAO. (2004a). *Performance Budgeting: OMB's Performance Rating Tool Present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valuating Program Performance*, GAO-04-550T.
- _____. (2004b). *Performance Budgeting: Observations on the Use of OMB's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for the Fiscal Year 2004 Budget*, GAO-04-174.
- _____. (2005). *Program Evaluation: OMB's PART Reviews Increased Agencies' Attention to Improving Evidence of Program Results*, GAO-06-67.
- Gilmour, John B. & Lewis, David E.. (2006). "Assessing Performance Budgeting at OMB: The Influence of Politics, Performance, and Program Size", *Journal of Public Research and Theory*, 16(2): 169-186.

사업평가 현안분석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국내 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및 경쟁전략 수립	구상욱	2004.11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사업평가와 개선방안	최미희	2005. 2
3	성과지표측정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사업평가	신동진	2005. 4
4	과학기술부문 경쟁력 평가: 한·중·일 지식기반 기술경쟁력 평가를 중심으로	권용수·박추환	2005. 4
5	두뇌한국21 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이용준·이선주·김혜영	2005. 4
6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항만개발의 발전방안	남광현	2005. 5
7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철	2005. 5
8	IT839 전략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박추환	2005. 5
9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배종학	2005. 8
10	간접투자자산운용 정책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구상욱	2005. 8
11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은행구조조정의 성과평가	신동진	2005. 8
12	교통시설 SOC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필요성 고찰	안태훈	2006. 5
13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재원조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이은경	2006. 6
14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별 환경성·경제성 분석	최미희·서세욱	2006. 6
15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박추환	2006. 7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6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김병진	2006. 9
17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최미희	2007. 9
18	성과관리 시행계획(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방법	이인섭·금재덕	2007.12
19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태훈	2008. 9
20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최미희·이은경· 김현중·서세욱	2008.10
21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현황 및 문제점	허가형·안태훈· 이은경·이화실	2008.10
22	공기업 택지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한국토지공사를 중심으로	안태훈	2008.10
23	환변동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은경	2009.10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24호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발 간 일 2009년 12월 2일
편 집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발 행 인 신해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3780

인 쇄 처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TEL 02·788·467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280-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